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4)

1. 의안명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7. 12. 12.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7. 12. 12.

라. 위원회 심사 : '97. 12. 23.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가. 제안이유

○ 종전에는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위반 행위 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합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주요골자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자별 처분 기준과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징수 절차는 기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다만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 제20조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7을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4. 검토보고요지

- 현재, 조례로 정하여진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사회여건과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개정이 쉬우므로 현실정에 맞는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종전에는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제출년월일 : 1997. 12.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3항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별 처분기준과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0만원이하 또는 100만원이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됨.
- 위 내용과 같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존 조례에 정해진대로 운영하고, 다만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 따라서 조례 제20조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을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울산광역시의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3. 주요내용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조문 전면개정
 -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칙으로 정함
-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기타 참고서류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7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u> <u>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u> <u>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u> <u>한 결표7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야</u> <u>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u> <u>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u> <u>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u> <u>적용한다.</u></p>	<p><u>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u> <u>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u> <u>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u> <u>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u> <u>별 과태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u></p>

법	시 행령	시 행 규칙
<p>6의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p> <p>7.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理한 者</p> <p>8. 第24條第2項·第25條第4項 또는 第44條의2第 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p> <p>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任命하 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p> <p>13. 第42條의 規定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제62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藥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 條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63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 한 者</p> <p>2. 第30條第3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p> <p>3. 第4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 또</p>		

법	시 행령	시 행 규칙
<p>는 使用制限命수 을 위반한 者</p> <p>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 의 過怠料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廉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 命수 또는 措置命수을 위반한 者 4.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 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 니하고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한 者 6. 第39條第1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 니하거나 訂正로 申告를 한 者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詛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0.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 니한 者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p>	제42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법	시 행령	시 행 규 칙
<p>統領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管별로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部長이 賦課·徵收한다.</p> <p>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者は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기할 수 있다.</p> <p>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처분을 받은者が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p> <p>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판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제63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폐기물로서 가정쓰레기와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쓰레기를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쓰레기"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등으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블럭등)·목재류·철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5. 봉투판매 대금을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
6.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9조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21조 (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별표 7]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 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 배꽁초·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 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 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 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2의 재 생처리자 제외)"	매회30 50 100 200 500	매회30 70 150 300 700	매회30 매회100 매회200 매회500 매회 1,000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 2항) 가.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다만 제7조 제1항의 규정중 쓰레기 봉투 를 둑지 아니한 경우 다.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 처리하는 경우	100 매회50 100	200 매회50 200	매회500 매회50 매회500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1, 2항) 4.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등이 폐기물 처리담당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 (법 제40조) 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의 경우 나. '가' 이외의 경우	300 300	500 400 500	매회 1.000 500 매회1.000